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0호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함에 따라,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제9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6.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미장동 37-6, 조촌동 238-4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송정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 개요			실시계획			비 고
	시설명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대로1-1	35	5,500	35	310	6,926	변경없음 (지장물 추가)
도 로	중로1-62	20	580	12	94	1,228	
도 로	중로3-25	12	175	12	175	2,129	
소 계						10,283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유)송정건설 대표 황의철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주택건설사업 승인일 ~ 2012.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나. 무상양도 : 해당 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미장	37-6	답	6	6	옥구읍 선제리 361	안현철		
변경	군산	미장	37-6	답	6	6	옥구읍 선제리 361	안현철		
당초	〃	〃	37-8	답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7-8	답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7-5	답	91	9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7-5	답	91	9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8-1	답	121	12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8-1	답	121	12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8-2	답	13	1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8-2	답	13	1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9-1	답	235	23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9-1	답	235	23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9-2	답	30	3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9-2	답	30	3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0-1	답	520	5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0-1	답	520	5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0-2	답	36	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0-2	답	36	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1-1	답	620	6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1-1	답	620	6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1-10	답	115	11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1-10	답	115	11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1-11	도	352	352		국(건설부)		
변경	〃	〃	41-11	도	352	352		국(건설부)		
당초	〃	〃	455-7	도	80	80		국(농수산부)		
변경	〃	〃	455-7	도	80	80		국(농수산부)		
당초	〃	〃	455-5	구	2	2		국(농수산부)		
변경	〃	〃	455-5	구	2	2		국(농수산부)		
당초	〃	〃	455-6	구	4	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55-6	구	4	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56-40	구	646	646		국(농수산부)		
변경	〃	〃	456-40	구	646	646		국(농수산부)		
당초	〃	〃	64-45	구	59	59		군산시		
변경	〃	〃	64-45	구	59	59		군산시		
당초	〃	〃	64-47	도	458	458		국(건설부)		
변경	〃	〃	64-47	도	458	458		국(건설부)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조촌	238-4	도	108	108		국(건설부)		
변경	군산	조촌	238-4	도	108	108		국(건설부)		
당초	〃	〃	239-32	대	64	64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2	대	64	64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4	전	180	180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4	전	180	180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5	전	6	6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5	전	6	6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6	전	44	44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6	전	44	44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7	도	125	125		국(건설부)		
변경	〃	〃	239-37	도	125	125		국(건설부)		
당초	〃	〃	240-18	대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0-18	대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0-11	대	84	84	소룡동1323-13동아아파트 105동1302호	이신애		
변경	〃	〃	240-11	대	84	84	소룡동1323-13동아아파트 105동1302호	이신애		
당초	〃	〃	240-17	대	15	15	소룡동1323-13동아아파트 105동1302호	이신애		
변경	〃	〃	240-17	대	15	15	소룡동1323-13동아아파트 105동1302호	이신애		
당초	〃	〃	240-13	도	11	11		국(건설부)		
변경	〃	〃	240-13	도	11	11		국(건설부)		
당초	〃	〃	240-14	도	399	399		국(건설부)		
변경	〃	〃	240-14	도	399	399		국(건설부)		
당초	〃	〃	240-15	도	125	125		국(건설부)		
변경	〃	〃	240-15	도	125	125		국(건설부)		
당초	〃	〃	240-16	도	72	72		국(건설부)		
변경	〃	〃	240-16	도	72	72		국(건설부)		
당초	〃	〃	241-11	도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1-11	도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9	전	344	34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9	전	344	34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4	도	22	22		(유)송정건설, 김대현		
변경	〃	〃	244-4	도	22	22		(유)송정건설, 김대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조촌	244-13	도	70	70		(유)송정건설, 김대현		
변경	군산	조촌	244-13	도	70	70		(유)송정건설, 김대현		
당초	〃	〃	244-5	대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5	대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15	대	55	5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15	대	55	5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20	대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20	대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17	대	319	31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17	대	319	31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5-10	전	378	3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5-10	전	378	3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5-26	도	64	64		국(건설부)		
변경	〃	〃	245-26	도	64	64		국(건설부)		
당초	〃	〃	246-1	대	234	23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1	대	234	23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18	대	246	24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18	대	246	24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29	도	9	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29	도	9	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33	임	73	7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3	임	73	7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46	임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46	임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7-2	대	29	2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7-2	대	29	2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7-11	도	319	319		국(건설부)		
변경	〃	〃	247-11	도	319	319		국(건설부)		
당초	〃	〃	247-9	대	48	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7-9	대	48	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51-9	도	50	50		군산시		
변경	〃	〃	251-9	도	50	50		군산시		
당초	〃	〃	724-7	도	34	34		국(건설부)		
변경	〃	〃	724-7	도	34	34		국(건설부)		
당초	〃	〃	239-38	도	14	14		국(건설부)		
변경	〃	〃	239-38	도	14	14		국(건설부)		
당초	〃	〃	239-48	임	33	33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변경	군산	조촌	239-48	임	33	33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군산	조촌	239-39	임	15	15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9	임	15	15	나운동835 주공3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41	임	405	40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39-41	임	405	40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39-42	도	18	6		국(건설부)		
변경	〃	〃	239-42	도	18	6		국(건설부)		
당초	〃	〃	239-43	도	109	109		국(건설부)		
변경	〃	〃	239-43	도	109	109		국(건설부)		
당초	〃	〃	239-44	도	182	182		국(건설부)		
변경	〃	〃	239-44	도	182	182		국(건설부)		
당초	〃	〃	239-28	도	104	104		국(건설부)		
변경	〃	〃	239-28	도	104	104		국(건설부)		
당초	〃	〃	239-30	임	868	86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39-30	임	868	86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39-47	도	175	175		국(건설부)		
변경	〃	〃	239-47	도	175	175		국(건설부)		
당초	〃	〃	246-36	임	248	2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6	임	248	2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37	도	174	174		(유)송정건설 .국(건설부)		
변경	〃	〃	246-37	도	174	174		(유)송정건설 .국(건설부)		
당초	〃	〃	246-38	임	79	7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8	임	79	7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39	임	178	1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9	임	178	1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51	도	119	119		국(건설부)		
변경	〃	〃	246-51	도	119	119		국(건설부)		
당초	〃	〃	246-41	임	42	42	경남 거제시 옥포동 524-14 동신궁전빌라 303호	박마리아		
변경	〃	〃	246-41	임	42	42	경남 거제시 옥포동 524-14 동신궁전빌라 303호	박마리아		
당초	〃	〃	356-52	도	253	253		국(건설부)		
변경	〃	〃	356-52	도	253	253		국(건설부)		
당초	〃	〃	69필지		10,295	10,283				
변경	〃	〃	69필지		10,295	10,28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연번	위치			지장물	상황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신규	1	군산	조촌	239-32외	주택	경량철골조 적벽돌판넬	92.4	㎡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주공3아파트 127/203	김근석	
					베란다	새시조 판넬	13.65	㎡			
					보일러실	벽돌조 판넬	8.06	㎡			
					창고	경량조골조 판넬	29.2	㎡			
					바닥포장	콘크리트	1	식			
					담장	적벽돌	60	m			
						능형망					
					대문		1	식			
					지하수		1	식			
신규	2		조촌	240-6	철쭉		5	주	군산시 소룡동 1323-13번지 동아아파트 105/1302	이신애	
					대추나무		1	주			
					철쭉		6	주			
					철쭉		1	주			
					대추나무		2	주			
					철쭉		6	주			
					철쭉		2	주			
					무화과		1	주			
					철쭉		2	주			
					동백나무		2	주			
					자두나무		1	주			
					오가피		2	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연번	위치			지장물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신규	3	군산	조촌	240-11	석류나무		1	주	군산시 소룡동 1323-13번지 동아아파트 105/1302	이신애	
					감나무		1	주			
					감나무		1	주			
					감나무		1	주			
신규	4		조촌	239-36	밤나무		3	주			
					두릅나무		50	㎡			
신규	5		조촌	239-34	감나무		1	주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주공3아파트 127/203	김근석	
					매실나무		1	주			
					사철나무		1	주			
					뽕나무		1	주			
					밤나무		11	주			
					감나무		1	주			
					밤나무		1	주			
					아카시아		1	주			
					자귀나무		1	주			
신규	6		조촌	239-32	대추나무		1	주			
신규	7		조촌	239-48	소나무		1	주			
					소나무		1	주			
					밤나무		1	주			
신규	8		조촌	239-34	분묘		2	기	군산시 나운동 835	김근석	
							1	기			

군산시 고시 제2010 -9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아래와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 08. 3.

군 산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10-91호

2. 허가연월일 : 2010. 8. 3

3. 점·사용목적 : 침몰선 해저탐사 및 매장물 발굴

4. 점·사용 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선유봉) 남방5km지점
5. 점·사용 면적 : 500㎡

6 점·사용 기간 : 2010. 09 . 1. ~ 2010. 12. 31.(4개월간)

7. 점·사용허가를 받은자 : 편도영

8 기타사항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매장물발굴)

군산시고시 제2010- 92호

낚시어선업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금지구역, 낚시어선업자 의무지정 고시

제 정 2002. 10. 24
개 정 2009. 07. 23
일부개정 2010. 08. 13

낚시어선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군 산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 "낚시어선업자" 라 한다) 및 그 어선과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 시간)

가. 하절기(4월 1일~ 10월 31일) ⇒ 04:00 ~ 22:00
나. 동절기(11월 1일~익년 3월31일) ⇒ 04:00 ~ 20:00
다. 선외기를 설치하거나 레이다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 소형낚시어선(3톤미만), 선박검사증서에 야간 항해금지 낚시어선 :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 단 레이다 등 야간 항해장비 설치 낚시어선은 가,나,다항에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상 항해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운항회수) 영업시간내 수시로 운항 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 기관에 매회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고, 당일 안내한 낚시객은 영업시간내 전원 안전귀항

조치 하여야한다.

제5조(영업구역 등)

① 영업구역은 전라북도지사 관할 수역으로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 및 낚시장소에 안내 하여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2. 무인도서, 갯바위, 간출암 등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업구역내 낚시금지구역 지정(**8개소**)

금지구역		소 재 지	좌 표	사 유
도서명	위치			
직도	전체	옥도면 말도리	35-38-00N 126-04-30E	공군 해상사격장
관리도	서방	옥도면 관리도리	35-48-00N 126-22-15E	급경사 절벽,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명도	북방	옥도면 명도리	35-51-00N 126-20-30E	〃
흑도	전체	옥도면 관리도리	35-49-30N 126-23-00E	무인도,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역경	끝단	옥도면 개야도리	36-02-00N 126-31-00E	〃
솔푼서	전체	옥도면 말도리	35-51-30N 126-21-15E	간출암, 파도등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지난
신시도	배수갑문 일원	옥도면 신시도리	35-48-56N 126-28-38E	배수갑문 개방 안전사고발생 상존
가력도	배수갑문 일원	옥도면 비안도리	35-43-53N 126-31-25E	배수갑문 개방 안전사고발생 상존

④ 낚시어선의 승객을 도서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이 당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선주, 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를 유지하여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 하여야 한다.

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낚시객 준수사항을 교육 시킨후 출항 하여야 한다.

제7조(승객(낚시객) 준수사항)

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식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③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후 승선 하여야 한다.

④ 승객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시기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3톤미만 소형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 하여야 한다.
8. 승객은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승선정원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낚시승객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시(제2002-718호)에 의해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본 명령은 본 개정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시(제2009-66호)에 의해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본 명령은 본 개정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 표】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 방법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흑색

(2) 바탕 : 승객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장소

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게시문

승선정원 명 (백색)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지

① 출항전에 낚시어선을 점검하고 기상상태확인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낚시객 준수사항을 교육 시킨후 출항 하여야 하며, 음주,약물,기타사유로 낚시어선을 운항할수 없을 경우 운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①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가상악화등 상황 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한다.

② 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휴지통을 비치 하여야 한다.

3. 낚시승객 준수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식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③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후 승선 하여야 한다.

④ 승객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시기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고, 해상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출항의 제한

① 낚시어선업법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3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20.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2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학교
   ▷ 명 칭 : 군산대학교 시설확충 (후생복지관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814,464㎡
   ▷ 규 모
      - 당초 : 건축면적 64,026㎡, 연면적 211,493㎡
      - 변경 : 건축면적 64,326㎡, 연면적 211,493㎡
4.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미룡동 1170번지
   ▷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대학교 총장 채정룡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993. 01.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미룡동	287-3	답	1,412	1,412		국(교육인적자원부)			
2	미룡동	287-4	답	260	260	미룡동 287-65	박종자			
3	미룡동	287-6	답	563	152	나운동 866-1 유원아파트 3동 606호	윤종백			
4	미룡동	287-7	답	1,406	80	옥구군 미면 신관리 194	심재복			
5	미룡동	287-25	구거	777	777		국(농림수산부)			
6	미룡동	287-67	답	446	446		국(교육인적자원부)			
7	미룡동	290-2	학교	469,061	465,271		국(교육인적자원부)			
8	미룡동	303-3	답	2,581	2,581		국(교육인적자원부)			
9	미룡동	315-5	도로	25,237	24		군산시			
10	미룡동	350-7	도로	23	23		국(교육인적자원부)			
11	미룡동	458-5	도로	448	48		국(교육인적자원부)			
12	미룡동	461-2	도로	906	3		국(농림수산부)			
13	미룡동	461-10	도로	25	1		국(교육인적자원부)			
14	미룡동	660-14	대지	2,273	60	나운동527 나운2차현대아파트 201동 1504호	한수용			
15	미룡동	667-6	도로	60	60	미룡동362	전기풍			
16	미룡동	668-2	도로	693	657		국(교육인적자원부)			
17	미룡동	692-2	도로	23	23	미룡동 685	고석호			
18	미룡동	694-2	도로	83	83					
19	미룡동	697-2	도로	10	10	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112-3 예그린아파트다동107호	진필선			
20	미룡동	699	학교	6,517	6,517		전라북도(교육청)외1인 국(교육부)			
21	미룡동	704-3	대지	388	388		국(교육인적자원부)			
22	미룡동	704-5	학교	53	53		국(교육인적자원부)			
23	미룡동	704-6	도로	19	19	미룡동 350	서순영			
24	미룡동	704-7	학교	43	43		국(교육인적자원부)			
25	미룡동	704-8	도로	45	45		전라북도			
26	미룡동	705-1	도로	33	33	미룡동 361	김기태			
27	미룡동	720-6	구거	283	283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28	미룡동	720-7	구거	116	116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29	미룡동	834-1	도로	14,263	51		국(건설부)			
30	미룡동	834-3	도로	9	9		국(건설부)			
31	미룡동	834-7	도로	32	32		국(농림수산부)			
32	미룡동	834-9	도로	4,337	120		국(건설부)			
33	미룡동	834-28	도로	60	60		국(건설부)			
34	미룡동	840	도로	496	496		국(농림수산부)			
35	미룡동	산116	임야	17,361	17,361	서울시 도봉구 수유 251-11 서울 중랑 목동 171-4 청호주택 3동 103호	국(문교부)외 2인 전용태, 전용생			
36	미룡동	산123-1	임야	595	595		국(교육인적자원부)			
37	미룡동	산125	임야	198	198		국(교육인적자원부)			
38	미룡동	산126	임야	99	99		국(교육인적자원부)			
39	미룡동	산67-2	임야	198	198	서울 강남 청담동 109-7	전상현			
40	미룡동	산70	임야	1,488	430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5 중산마을 501동501호	박영순			
41	미룡동	산77-1	도로	240	240		국			
42	미룡동	산97	임야	99	99	구읍면 수산리	전재성			
43	신관동	1	학교	73,666	68,264		국(교육인적자원부)			
44	신관동	2-2	전	686	686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03-56	최태엽			
45	신관동	2-3	전	233	23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한강우성아파트 102동 605호	김용환			
46	신관동	41-3	도로	53	53		국(농림수산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7	신관동	41-34	답	638	638	군산시 소룡동 1393-70	이삼제			
48	신관동	41-36	답	634	634		국(교육인적자원부)			
49	신관동	41-37	답	1,008	1,008		국(교육인적자원부)			
50	신관동	42-81	구거	1,914	1,514		국(농림수산부)			
51	신관동	160-1	전	175	2	신관동 171	심재자			
52	신관동	161	전	40	37	신관동 171	심재자			
53	신관동	162	전	744	331	동흥남동 407-14	김국회			
54	신관동	163	대지	413	413	동흥남동 407-15	김국회			
55	신관동	164	대지	235	235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344-2 금호건설현장사무실	심경화			
56	신관동	165	전	73	73	동흥남동 407-15	김국회			
57	신관동	166	대지	311	311	신관동 271	박복삼			
58	신관동	167	대지	155	155	광주시 동구 불로동 97-3	최석란			
59	신관동	168	대지	258	258		국(교육인적자원부)			
60	신관동	169	전	311	222	신관동 174	이봉수			
61	신관동	178-2	임야	60	60		국(교육인적자원부)			
62	신관동	190-1	임야	1,983	1,946	신관동 189	김정자			
63	신관동	190	전	899	678	신관동 197	이장세			
64	신관동	288	전	975	975	신관동 197	이장세			
65	신관동	290-2	학교	225,819	221,777		국(교육인적자원부)			
66	신관동	304	전	288	288	신관동 272	박복삼			
67	신관동	313-2	전	1,947	1,947		국(교육인적자원부)			
68	신관동	313-3	전	985	985		국(교육인적자원부)			
69	신관동	313-4	임야	3,590	3,590		국(교육인적자원부)			
70	신관동	327-3	도로	93	93	군산시 중앙로 2가 47	황수옥			
71	신관동	356	답	1,782	925	조촌동 903-2 현대아파트 106동 201호	조남섭 외1인 국(교육인적자원부)			
72	신관동	357	전	2,020	21	신관동 170	조성일			
73	신관동	361	전	641	92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12동 203호	김종환			
74	신관동	403	답	1,421	29	강원도 강능시 포남동 36부럭 3롯트 백조아파트 3동 201호	강찬용			
75	신관동	405	전	902	902	신관동 536	성애순			
76	신관동	427	학교	3,274	2,167		국(교육인적자원부)			
77	신관동	940-1	도로	179	179		국(건설부)			
78	신관동	941-9	도로	22	22		국(건설부)			
79	신관동	941-10	도로	948	948		국(건설부)			
80	신관동	산112	도로	298	298		국(농림수산부)			
81	신관동	산14-7	임야	451	451	익산시 동산동 299 전주시 진북동 988-32 전주시 효자동 1가 296-5	최정수 외2인 최종휴 최한철			
82	신관동	산16-6	임야	99	99	군산시 신영동 138-14 군산시 신영동 138-14	서정생 서기석			
83	신관동	산26	임야	5,646	81	서울 강남 청담동 134-9 한양아파트 1동808호 군산시 신흥동 36-52 서울 강남 도곡동 538 진달래아파트3동1104호	나홍렬 외2인 김철형 홍기대			
84	신관동	산31	임야	56	56	구읍면 어은리	문병국			
85	신관동	산35	임야	992	122	군산시 미룡동 425	조남대			
86	신관동	산53	임야	2,281	103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대능리 14	심두섭			
87	신관동	산62-1	임야	818	818	군산시 소룡동 1423	조남록			
88	신관동	산71-1	임야	3,574	122		국(교육인적자원부)			
89	신관동	산73	임야	1,488	27		국(산림청)			
90	신관동	산76	임야	2,018	38	대야면 죽산리 560	박말순			
91	신관동	산79	임야	1,785	102	서울 도봉구 창동807 쌍용아파트 113동 901호	허혜경			
계				902,140	814,464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20.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운동 117-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명 칭 : 중부교회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결정	금회시행			
				연장(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도로	소로	2	792		110	8	110	930
합 계								930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나운동 788-8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예수교장로회중부교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당초 : 2008. 12. ~ 2009. 12. 31.
   나. 변경 : 2008. 12.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나. 무상양도 : 해당 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나운동	1	105-8	답	10	4	대한예수 교장로회 중부교회	군산시 나운동 788-8				
	2	117-3	전	2,308	640	대한예수 교장로회 중부교회	군산시 나운동 788-8				
	3	118-6	전	23	9	대한예수 교장로회 중부교회	군산시 나운동 788-8				
	4	119-4	전	436	58	주 응 서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현대아파트 405동 2005호				
	5	119-5	전	98	98	주 응 서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현대아파트 405동 2005호				
	6	124-9	전	115	115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7	124-10	전	6	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계		7필지		2,996	930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5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20.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사정동 512-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시청~운동장간 [대로2-6호선] 도로개설	대로2-6	30	5,847	30	850	33,018	
소 계					850	33,018	

3.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6. ~ 2012. 6.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군산시 사정동	512-3	대	127	110	국	군산시			
2	“	512-5	대	228	225	국	군산시			
3	“	512-4	전	312	265	국	군산시			
4	“	512-1	전	52	52	장현숙	나운동 401 삼성아파트 106동 203호			
5	“	산8-3	임	957	268	국	군산시			
6	“	산8-1	임	490	76	장현숙	나운동 401 삼성아파트 106동 203호			
7	“	511	대	65	22	송효숙	100금호타운아파트 205동903			
8	“	511-1	대	292	292	국	군산시			
9	“	510-1	대	279	12	최영숙	510-1	군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설정	
10	“	510-3	대	28	28	최영숙	510-1	군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설정	
11	“	501-2	도	33	33	고석규	505-1			
12	“	510-2	도	3	3	고재길	조촌동 486-8			
13	“	501-1	전	208	208	고석규	505-1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14	“	509-1	대	380	5	조순옥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1 우정꿈동산아파트 10동107호			
15	“	509-4	대	3	3	조순옥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1 우정꿈동산아파트 10동107호			
16	“	509-5	도	2	2	이연애	512	군산세무서		압류
17	“	509-3	도	7	7	이연애	512	군산세무서		압류
18	“	505-3	도	2	2	고삼례	502			
19	“	499-3	도	7	7	강숙애	496-9			
소 계				19	1,62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20	군산시 사정동	505-7	도	31	31	고삼례	502			
21	“	505-2	대	173	52	고삼례	502			
22	“	505-6	대	558	558	고삼례	502			
23	“	505-4	대	104	34	고석규	505-1	군산시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24	“	505-1	대	313	313	고석규	505-1	군산시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25	“	산2	임	1,983	107	채규민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004			
26	“	504-4	전	358	358	고석규	505-1			
27	“	504-1	전	118	118	고석규	505-1			
28	“	산3	임	992	1	고석규	505-1			
30	“	산9-1	임	186	1	국	군산시			
31	“	500-3	전	17	17	고석규	505-1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32	“	513-2	대	606	21	전순필	483-18			
33	“	512-2	도	7	1	오준열	543-4			
34	“	500-5	대	55	55	고석규	505-1			
35	“	500-1	전	215	35	고석규	505-1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36	“	500-4	전	171	171	고석규	505-1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37	“	498-1	전	473	14	강숙애	469-9			
38	“	499-4	전	221	221	강숙애	469-9			
소 계				18	2,108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39	군산시 사정동	499-1	전	308	46	강숙애	496-9			
40	“	499-5	전	8	8	고일인	510			
41	“	502-2	도	7	7	고삼례	502			
42	“	499-2	전	78	4	고일인	510			
43	“	562-19	도	1,425	199	국	농수산부			
44	“	502-7	도	17	17	고삼례	502			
45	“	502-5	도	6	6	고삼례	502			
46	“	502-6	전	196	196	고삼례	502			
47	“	502-1	전	39	7	고삼례	502			
48	“	505-5	대	13	9	고삼례	502			
49	“	503	대	793	7	고용규	의왕시 내손동 799 대원칸타빌 2단지 203동505호			
50	“	504-3	대	541	541	박창규 외1인	나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203-502			
51	“	504	대	153	41	박창규 외1인	나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203-502			
52	군산시 개정동	산1	임	4,461	2,020	제주고씨문충공파옥산종회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419			
53	“	656	전	932	293	이판순	651			
54	“	651	대	380	235	고승봉	651			
55	“	산2-1	임	766	373	고영남	651			
56	“	산2	임	1,118	430	고석규	사정동505-1			
57	“	산6-1	임	8529	1,841	김세훈외2인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1671			
소 계				19	6,28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58	군산시 개정동	544-5	전	400	163	김세훈외2인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1671			
59	“	544-1	전	883	16	왕준택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398 느리울마을 1205동 1302호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설정	
60	“	544-2	전	278	244	고천수	600			
61	“	544-8	도	126	95	고천수	514-3			
62	“	544-3	도	53	52	고천수	514-3			
63	“	681	도	1,236	43	국	농수산부			
64	“	564-2	답	796	185	김천식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501-28			
65	“	564-1	답	273	63	국	군산시			
66	“	565-2	답	215	215	국	군산시			
67	“	565	답	4,006	2,958	박정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6-68 금오다세대 101호	군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68	“	564	답	3,067	373	전기풍	옥구읍 상평리 149	군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설정	
69	“	594-4	답	400	26	서인열	소룡동 1332			
70	“	594-5	전	767	304	서인열	소룡동 1332			
71	“	578	전	2,711	1,760	채규정	603			
72	“	579-1	전	1,286	1,071	문천수 외 3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13-2102			
73	“	581-1	전	393	303	유현순 외 4인	357			
74	“	583-1	전	962	879	유현순 외 4인	357			
75	“	583-3	도	93	84	김종순	357			
76	“	583-2	도	60	60	김종순	357			
소 계				19	8,894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77	군산시 개정동	585-3	도	291	94	김굉륜	평화동 158			
78	“	585-6	도	192	70	김굉륜	평화동 158			
79	“	585-22	대	4	4	장남주	585-1			
80	“	585-1	대	326	286	장남주	585-1			
81	“	442-14	전	605	570	이금암	587			
82	“	442-12	전	2,193	760	감기경 외1인	미장동 381-126	군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83	“	589	대	661	10	고영자	586			
84	“	586	대	1,018	1,018	이주민	경암동 657-25			
85	“	587	대	122	70	김성화	433-1			
86	“	434-1	대	238	159	조윤오	434-1			
87	“	434-2	도	89	89	김금순	586			
88	“	441-3	도	7	7	이윤성	441			
89	“	434-3	대	10	10	조윤오	434			
90	“	441-1	도	17	17	이윤성	441			
91	“	435-1	대	393	128	이순정	435-1			
92	“	435-3	도	33	33	성산새마을금고	고봉리 263-45			
93	“	436-1	대	296	128	최용궈	587			
94	“	436-5	대	119	73	최용권	587			
95	“	436-4	전	592	100	최용권	436-1			
소 계				19	3,626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96	군산시 개정동	436-6	전	418	373	유현순	357			
97	“	32-27	대	949	159	유현순	357			
98	“	655-2	대	625	137	고흥석 외1인	수송동 656 도영임대아파트 101동 1406호			
99	“	655-1	대	248	248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조촌동 774	군산시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설정	가압류
100	“	652	대	294	169	고영곤	655-2			
101	“	산3-1	임	1,190	317	오준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6-6 무궁화아파트 501동 204호			
102	“	산4	임	2,479	1,032	이윤성 외1인	익산시 어양동 709 익산자이아파트 109-601			
103	“	산5	임	298	216	조자중				
104	“	544-9	도	13	4	김세훈외2인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1671			
105	“	543-4	대	499	22	채문석	543-4			
106	“	543-1	전	912	419	고천수	600			
107	“	543-3	전	430	2	채문석	543-4			
108	“	564-3	답	264	256	홍순흥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도오 689 산호아파트 107-502			
109	“	543-2	답	71	66	채문석	543-4			
110	“	543-7	답	27	27	국	군산시			
111	“	566-2	답	3,990	192	박상배	서울 강남구 삼성동 99-1 골든빌 501			
112	“	566-1	답	4,314	1,854	김영용	604			
113	“	579	전	1,021	907	안병오	산북동 2779	서군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	
114	“	576-1	전	562	20	유현순외4인	357			
소 계				19	6,42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15	군산시 개정동	580	전	793	93	유현순외4인	357			
116	“	582-1	전	248	248	유현순외4인	357			
117	“	581-2	답	202	8	유현순외4인	357			
118	“	582-2	전	446	43	유현순외4인	357			
119	“	584-1	전	1,147	138	유현순외4인	357			
120	“	584-2	도	73	12	유현순외4인	357			
121	“	585-8	대	159	159	곽영배	사정동 430	군산시	지상권설정	
122	“	585-9	대	258	258	장미대	585-9			
123	“	585-10	대	446	113	박영서	585-10			
124	“	585-21	대	240	57	양석운	나운동 92 금호타운 아파트 204-103			
125	“	585-7	대	354	17	김종회	군산시 경장동 515-14 한아름주택가동 103호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압류
126	“	441-2	대	621	519	김병두	나운동 402 삼성아파트 105-1901			
127	“	437-3	도	30	30	홍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가지 아파트 1008동 503호			
128	“	437-5	전	231	231	홍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가지 아파트 1008동 503호			
129	“	440	대	397	183	홍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가지 아파트 1008동 503호			
130	“	435-2	도	83	18	성산새마을금고	성산면 고봉리 263-45			
131	“	437-6	도	17	17	홍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가지 아파트 1008동 503호			
132	“	437-8	도	23	23	최용헌	440			
133	“	436-2	도	56	45	최창신	587			
소 계				19	2,212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34	군산시 개정동	436-3	도	73	58	최창신	587			
135	“	439	대	638	499	최용헌	440			
136	“	437-1	전	205	205	이주운	413			
137	“	442-3	전	251	2	최영춘	조촌동 787-11			
138	“	442-1	전	506	1	이헌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엘지아파트 103동 706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설정	
139	“	437-9	대	588	588	이수근	586			
140	“	437-2	도	248	248	최용헌	440			
141	“	437-7	도	129	107	최창신	439			
142	“	438-2	대	460	108	이헌구외1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엘지아파트 103동 706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설정	
143	“	438-1	도	17	17	이헌구외1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엘지아파트 103동 706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설정	
144	“	32-9	도	40	25	최창신	439			
소 계				11	1,858					
합 계				143	33,018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동	번지					주 소	성명	
1	군 산		사 정	513-2	버스승강장	철제	1EA	7.65㎡			
2	"		"	500-1	비닐하우스	1. 철제+비닐	1.1. 2동	1.1.1. 201.32㎡	사정동 505-1	고석규	
					수목		6주				
3	"		"	510-1	담장	블럭	1개소	12.5m	사정동510-1	최영숙	
					수목		7주				
4	"		"	509-1	담장	블럭	1개소	5m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1 우정꿈동산아파트 102동 107호	조순옥	
					수목		4주				
5	"		"	498-1	비닐하우스	철제	1동	11.7㎡	사정동469-6	강숙애	
6	"		"	499-1	비닐하우스	철제+비닐	2동	74.5㎡	사정동 496-6	강숙애	
7	"		"	505-2	건물	함석 + 스레트	2동	133.9㎡	사정동 502	고삼례	
					수목		11주				
8	"		"	505-1	가옥	스레트 + 슬라브	2동	123.8㎡	사정동 505	고석규	
					수목		7주				
9	"		"	504	창고	스레트	1동	56.0㎡	사정동 502	고삼례	
10	"		"	504	가옥	스레트 + 함석	2동	93.12㎡	나운동 91 금호타운아파트 203-502	박창규외1인	
					수옥		58주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 소	성명	
11	군산		사정	503	담장	블럭	1개소	10.1㎡	의왕시 내손동 799대원칸타빌 2단지 203동 505호	고용규	
12	"		"	504	가옥	2. 스레트	2.1. 2동	2.1.1. 124.4㎡	나운동 91 금호타운아파트 203-502	박창규외1인	
					담장	블럭	1개소	18.2㎡			
13	"		"	504-1	기수		2		사정동505-1	고석규	
14	"		"	산2	기수		1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004	채규민	
15	군산		개정	산1	기수		2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419	제주고씨	
16	"		"	산1	기수		3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419	제주고씨	
17	"		"	656	수목		65주		개정동 651	이판순	
18	"		"	655-1	가옥	슬라브	1종	99.95㎡	개정동 655-1	채완석	
19	"		"	655-1	창고	스레트	2동	2.3㎡	개정동 655-1	채완석	
20	"		"	655-2	창고	조립식	1동	84.3㎡	수송동 656 도영임대아파트 101-1406	고흥석외1	
21	"		"	651	비닐하우스	철제	1동	21.4㎡	개정동 655-1	채완석	
					수목		140주				
22	"		"	652	창고	스레트	1동	32.3㎡	개정동	정두철	
23	"		"	651	비닐하우스	철제 + 부직포	1동	14.0㎡	개정동 655-1	채완석	
24	"		"	산2	기수		2		사정동 505-1	고석규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 소	성명	
25	군산		개정	산2	기수		4		사정동505-1	고석규	
26	"		"	산6-1	기수	3.	3.1. 3	3.1.1.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1671	김세훈	
27	"		"	산5	기수		1		조자중		
28	"		"	산6-1	기수		2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1671	김세훈	
29	"		"	산5	기수		5			조자중	
30	"		"	543-4	창고	슬라브+스레트	2동	74.4㎡	개정동 543-4	채문석	
31	"		"	543-1	비닐하우스	철제	1동	299.0㎡	개정동600	고천수	
32	"		"	583-1	수목		3412주		개정동 357	유현수	
33	"		"	583-1	컨테이너	철제	1EA	24.0㎡	개정동585-1	유현수	
34	"		"	585-1	가옥	슬라브+스레트	2동	120.5㎡	개정동 585-1	장남주	
					담장	블럭	1개소	20.07m			
					철제대문		1EA				
					수목		63주				
35	"		"	585-8	가옥		2동	119.4㎡	나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204동103호	양석운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소	성명	
35	군산		개정	585-8	담장	블럭	1개소	21.3㎡	나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204동103호	양석운	
					철제대문	4.	4.1. 1EA	4.1.1.			
36	"		"	585-10	가옥	슬라브+스레트	4동	102.62㎡	개정동 585-10	박영서	
37	"		"	585-9	가옥	슬라브+스레트	2동	121.1㎡	개정동585-9	장미대	
					담장	블럭	1개소	45.9㎡			
					철제대문		1EA				
38	"		"	442-14	기수		1		개정동587	이금암	
39	"		"	585-21	가옥	슬라브	2동	27.09㎡	나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204동 103	양석운	
					담장	블럭	1개소	23.0m			
					수목		22주				
40	"		"	585-7	건물	슬라브	1동	3.38㎡	경장동 515-14 한아름주택 가동 103호	김종회	
41	"		"	587	공가	스레트	2동	71.8㎡	개정동 587	최창신	
42	"		"	586	가옥	기와+슬라브	2동	64.8㎡	개정동 586	고영자	
					철제대문		1EA				
					수목		2주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소	성명	
43	군산		개정	434-1	가옥	슬라브	4동	138.2㎡	개정동 434-1	조윤오	
					담장	5. 블럭	5.1. 1개소	5.1.1. 20.6㎡			
					수목		7주				
					철제대문		1EA				
44	"		"	441-2	가옥	스레트	2동	173.25㎡	개정동 509-1	유구열	
45	"		"	440	가옥	스레트	1동	92.85㎡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008동706호	홍기	
46	"		"	435-1	화장실	스레트+슬라브	1동	15.0㎡	개정동 435-1	이순정	
					담장	블럭	1개소	13.4m			
47	"		"	436-1	가옥	슬라브	1동	100.1㎡	개정동 587	최용권	
					철제대문		1EA				
					수목		40주				
48	"		"	439	가옥	스레트	1동	78.0㎡	개정동 439	최병도	
					수목		495주				
					우물	3×3	1EA	9.0㎡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 소	성명	
49	군산		개정	439	건물	스레트	1동	71.9㎡	개정동 439	최병도	
					철제대문	6.	6.1. 1EA	6.1.1.			
					간판		1EA				
50	"		"	437-9	가옥	스레트+슬라브	2동	156.8㎡	개정동 437-9	이수근	
					담장	블럭	1개소	48.9m			
					수목		62주				
					닭장	철조망	1동	48.9㎡			
51	"		"	438-2	창고	스레트	1동	65.1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엘지아파트 103동 706호	이헌구외1	
52	"		"	437-9	가옥	슬라브	1동	96.6㎡	개정동 437-9	이수근	
53	"		"	32-27	가옥	스레트+슬라브	2동	147.27㎡	개정동 357	유현순	
					담장		1개소	22.8㎡			
					수목		33주				
건 물							46동	2488.59㎡			
비닐하우스							8동	622.0㎡			
묘							25				
담 장							12개소	248.33m			
수 목							4544주				
우 물							1EA	9㎡			
철제대물							7EA				
간 판							1EA				
버스승강장							1EA				

군산시 공고 제2010-126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0년 8월 4일 - 8월 24일
- 장 소 : 군산시 세무과(과표계)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2010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대상임

❍ 의견제출

- 기 간 : 2010년 8월 4일 - 8월 24일
- 제출사항 :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대비 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산시 세무과(과표담당)
- 제출방법 : 군산시 세무과(과표담당)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0-4290,6155)로 문의바랍니다.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0-1306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증축공사 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전라북도 군산의료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8월 13일

1.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9-1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사업
   나. 명 칭 : 군산의료원 건축물(본관동) 증축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49,665.9㎡
   나. 규 모 : 본관동 1개동 및 부속동 2개동
      1) 시설결정면적 : 49,665.9㎡
      2) 건 축 면 적 : 5,338.01㎡
      3) 건축연면적 : 25,385.03㎡
4. 사업 시행자
   1)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9-1번지
   2) 성 명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0. 4. 30 ~ 2010. 8. 5
6. 관계도서 : 게제 실음생략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10-1279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달된 표준안에 준하여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 개선 - 안 제2조제3항, 별표2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 - 안 제16조 <신설>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 안 제17조제6항 <단서 신설>

라.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안 제18조제1항

마.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 450-6120, FAX : 450-4598, 전자우편 : mcga12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 (전화 450-6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2장 휴 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5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1항의 시행일(2010년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군산시 공고 제2010 -1319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1.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의거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기준을 마련하고, 용어 및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전체적 정비를 하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 요 내 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 부가금 부과** - 금품향응수수액 및 공금 횡령유용액의 1~5배 부과 ※ 징계부가금 부가기준 신설	제2조제1항 별표 2
	▶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부가금의 배수기재**	제8조제1항
2. 기타 용어정의 조문번호변경 문구수정 등	▶ **용어정의** - 징계 및 징계부가금 → 징계등 -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의결 → 징계의결등 - 징계의결요구권자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 **조문 제목변경** - 징계양정의 기준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제2조 제8조
	▶ **조문 번호변경** 제2조의2 → 제3조, 제4조 → 제5조, 제5조 → 제6조, 제6조 → 제7조, 제7조 → 제8조	
	▶ **문구수정** - "에 의하여" → "에 따라" / "에 의한" → "에 따른"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및 징계의결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군산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 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5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써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8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5와 별표6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3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징계부가금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5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표 5]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8조 관련)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2">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td><td col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td><td col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td></tr>
<tr><td>수동</td><td>능동</td><td>수동</td><td>능동</td><td>수동</td><td>능동</td></tr>
<tr><td>100만원 미만</td><td>경징계</td><td>경징계</td><td>경징계</td><td>중징계</td><td colspan="2" rowspan="3">중징계</td></tr>
<tr><td>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d>경징계·중징계</td><td>중징계</td><td colspan="2" rowspan="2">중징계</td></tr>
<tr><td>300만원 이상</td><td colspan="2">중징계</td></tr>
</table>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유 형 별</th><th>처리기준</th><th>비 고</th></tr>
<tr><td row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td>단순 음주운전</td><td>경 고</td><td rowspan="13">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td></tr>
<tr><td>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td><td>경징계</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td><td rowspan="4">경징계</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td><td rowspan="6">중징계</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r>
</table>